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541

발의연월일: 2025. 4. 2.

발 의 자:이종배·성일종·김미애

김소희 • 조배숙 • 서천호

박덕흠 • 이철규 • 강승규

윤재옥 · 최형두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국회 운영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수 없도록 하고,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의장의 임기 만료 후 이전 소속 정당 복귀 규정으로 인하여, 재직 중 공정한 의사 진행 및 결정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현행법으로는 의장의 정치 중립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 됨.

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2002년 의장의 당적 이탈 의무가 명문화되어 중립적인 의장모델이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의장의 편파적 의사진 행에 대해 의장을 대상으로 한 사퇴권고결의안이 제출되거나 권한쟁 의심판이 청구되는 등 국회의장의 중립적 역할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 되고 있다 강조한 바 있음.

또한, 국회의장이 예산안,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안건들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하는 사례가 이어져 의장의 당파적 의사결정이 정당 간 갈등을 조장하고 국회법 및 헌법으로 보장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우려도 제기됨.

이에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남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 동안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중립성을 제고하고자 함(안 제20조의2제1항).

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2제1항 본문 중 "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"을 "의원 임기만료일까지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기만료된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에 관한 적용례) 제20조의2제 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의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제20조의2(의장의 당적 보유 금 | 제20조의2(의장의 당적 보유 금 | | |
| 지)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 | 지) ① | | |
| 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| | | |
|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 | 의원 임기만료일까지 | | |
| 적(黨籍)을 가질 수 없다. 다만, | | | |
|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「공직선 | | | |
| 거법」 제47조에 따른 정당추 | | | |
| 천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| | | |
|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90 | | | |
| 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 | | | |
| 다. | | | |
|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당적을 | <u><삭 제></u> | | |
| 이탈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| | | |
|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| | | |
| 소속 정당으로 복귀한다. | | | |